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40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오세희 · 김남희 · 이주희
박희승 · 이용우 · 박홍배
박지원 · 전진숙 · 이훈기
장철민 · 윤종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 특례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와 복잡한 수출 행정 장벽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거나 판로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어렵게 창출한 산업융합 성과가 국가 경제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현황, 법령 정비 계획과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산업융합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8 신설).

아울러 규제특례를 받은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

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로 확보 및 융합 제품 특화 수출절차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등).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8(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및 제10조의6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현황, 제10조의4제6항 및 제10조의6제13항에 따른 법령정비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로 확보, 수출 마케팅 및 신제품 특성에 따른 수출절차 대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8(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및 제10조의6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현황, 제10조의4제6항 및 제10조의6제13항에 따른 법령정비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30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①·② (생략) <u><신 설></u>	제30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로 확보, 수출 마케팅 및 신제품 특성에 따른 수출 절차 대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③ (생략)</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